공포 훈령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181.7-1214	(전화번호 307)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장 121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1부시장	11/30	협조	463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법제계장		
기안책임자	김광시	1976.11.		

1206

결재 1976.12.1 시장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 시 장	통제

검열 1976.12.02

제목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실적심사 규정 (제정)

"제1안" 내부결재

1. 상수도 행정분야에 대한 구 및 수도국 산하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실적심사 결과로서 기업회계 경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각 심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업무 집행 책임감 및 성취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상수도 행정실적심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첨 훈령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실적심사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1. 훈령안 1부
2. 제정이유 1부
3. 참고자료 1부
4. 법무180-1222(76.11.22)호 끝

"제2안" . . . . . .

정서

관인

발송

0201-1-8A (갑)
1969. 11. 10 승인

190㎜×268㎜ 인쇄용지 (2급) 6.9/㎡)
시립소년기술원(92-0436)

1679

수 신 문화공보실장

제 목 시보 게재

별첨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심적심사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

첨 부 훈령안 사본 1부 끝

"제 2 안"

수 신 업무과장

제 목 훈령 발령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심적심사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 부 훈령안 사본 1부 끝

1976.12. 시장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실적심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자

(훈 령 안)

서울특별시훈령제 호

서울특별시상수도행정실적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상수도행정의 업무수행 성과를 확인하여 행정의 발전방향을 촉진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회계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행하는 상수도행정실적심사(이하 "심사"라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심사는 상수도행정분야에대하여 구 및 수도급수하 사업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한 심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 행정전반에 대한 실적
2. 업무의 창의성 및 촉진도
3. 행정의 능률성 및 합목적성
4. 기관장의 지도력
5. 기강과 서정쇄신 및 시민과의 총화단결을 위한 노력도

제4조(심사관) (1)상수도행정실적심사반은 업무분장별로 수도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한다)으로 구성하며 심사반의 책임관은 업무과장이된다.
(2)책임관은 수도국장의 명을 받아 심사반을 운영하며 각심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기관장의 지도력 및 시민과의 총화단결에 대한 심사는 수도국장 또는 행정담당관이 행할 수 있다.

제5조(심사시기) 심사는 연중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실시하되 그 결과를 상,하반기별로 종합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심사방법) (1)각 심사관은 소관분야의 업무유형과 내용에 따라 단위업무별 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2) 심사는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가산적 평가방법과 업무처리에 있어 태만, 부진, 불이행, 불준수 및 부적합등 저해요소를 반영하는 감산적 평가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7조(평점) (1) 심사의 종합평가에 있어서 기관별 총평점은 500점 만점으로 하고 심사사항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수도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2) 각심사관이 심사한 평점은 전항의 배점 비율에 따라 환산한다.

제8조(심사결과 처리) (1) 심사의 종합평가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금 및 표창을, 불량한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 또는 인사조치 토록한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성적은 서울특별시 구행정 실적심사규정에 의한 소관분야에 대한 구 심사 결과로 한다.

제9조(심사결과보고) 수도국장은 심사의 종합평가결과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상수도 행정 분야에 대한 구 및 수도국 산하 사업소 를 대상으로 한 업무실적심사결과로서 기업회계 경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에 각 심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의 책임감 및 성취 의욕을 유인하기 위하여 상수도 행정실적 심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실적 심사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서 울 특 별 시

업무 180-1222 1976. 11. 22.

담 당	법제계장	법무담당관	과장

수신 기획관리관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심적심사 규정(안)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심적심사 규정(안)을 별첨 내용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심적심사규정(안)3부. 끝.

지방행정사무관 [illegible]

수 도 국 장

1685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 실적심사 규정(안)

제 1 조:(목적) 이규정은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의 업무수행 성과를 확인하여 행정의 말단 침투를 촉진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회계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의 범위) 실적심사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실적을 심사 평정한다.

(1) 상수도 행정전반에 대한 실적

(2) 업무의 창의성및 촉진도

(3) 행정의 능률성, 적합성, 효과의 측정

(4) 기관장의 지도력

(5) 기강과 서정쇄신및 소비절약 추진실적 또는 시민과의 총화단결을 위한 노력도

제 3 조:(심사관) 상수도 행정실적심사는 업무분야별로 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실시한다.

단, 기관장의 지도력및 시민과의 총화단결에 대하여는 행정담당관및 수도국장이 실시한다.

제 4 조:(심사시기) 실적심사는 소관분야의 단위업무 전반에 걸쳐 연중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실시하되 여건에 따라 상,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할수 있다. 이간 평가를 하였을때는 연말 종합평가는 중간평가의 종합계로 서 한다.

제 5 조:(심사방법)

(1) 각 심사관은 소관분야의 업무유형과 내용에 따라 단위 업무별 기준을 정하여 실적심사를 하여야한다.

(2) 평가 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한다.

(3) 실적심사는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가산적 평가 방법과 업무처리에 있어 내만, 부진, 불이행, 불준수및 부적법등 저해요소를 반영하는 감산

적 심사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 6 조(점검)

(1) 심사의 종합평가에 있어서 기관별 총점은 500점 만점으로 하고 업무 분야별 배점은 수도국장이 따로 정한다.

(2) 각 심사관이 심사한 평점은 전항의 배점 비율에 따라 환산한다.

제 7 조(심사결과 처리)

(1) 이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시상금 및 표창을 내신하고 불량기관에 대하여는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 조(심사결과 보고)

(1) 심사관은 심사 결과를 수합지체없이 수도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도국장은 평가결과를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6. 12. 1일부터 시행한다.

2. 76년도 실적 심사는 연말 종합실적 심사로 시행할 수 있다.